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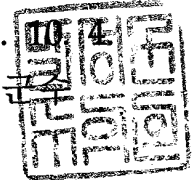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9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8.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옥포·현풍면 ‘읍’승격에 승인(행정안전부 승인 2018. 9. 5.)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별표1(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)
- 옥포면보건지소란을 유가읍보건지소란 다음에 삽입하고, 반송보건진료소란을 한정보건의지소란 다음에 삽입하며, “옥포면”을 “옥포읍”으로 변경 한다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성별/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 / 의견 있음 등
- (3) 규제심사 : 원안 동의 / 의견 있음 등
- (4) 입법예고 : 2018. 9. 17. ~ 9. 27.
- 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 중 “옥포면”을 각각 “옥포읍”으로 하고, 옥포읍보건지소(중전의 옥포면보건지소)란을 유가읍보건지소란 다음에 삽입하고 반송보건진료소란을 한정보건진료소란 다음에 삽입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 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

명 칭	소 재 지	관 할 구 역
달 성 군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130길 17	달성군 일원
화 원 읍 소 보건지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4	화원읍 일원
논 공 읍 소 보건지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79	논공읍 일원
다 사 읍 소 보건지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 7	다사읍 일원
유 가 읍 소 보건지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로96길 10	유가읍 일원
<u>옥 포 읍 소</u> <u>보건지소</u>	<u>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458길 6-2</u>	<u>옥포읍 일원</u>
가 창 면 소 보건지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100	가창면 일원
하 빈 면 소 보건지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423	하빈면 일원
구 지 면 소 보건지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11길 38	구지면 일원
음 리 보 건 소 진 료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음동1길 9	봉리, 용1·2·3리, 상리, 쌍계1·2리, 초곡리, 음리, 양리1·2리
한 정 보 건 소 진 료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달창로26길 17	한정1·2·3리, 가태1·2리, 본말1·2리
<u>반 송 보 건 소</u> <u>진 료 소</u>	<u>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용연사길 11</u>	<u>기세리, 반송1·2리, 김홍</u> <u>1·2·3리</u>
봉 촌 보 건 소 진 료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52길 66	봉촌1·2리, 동곡1리
무 등 보 건 소 진 료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734	대평1·2리, 무등1·2리, 기곡1·2리
대 암 보 건 소 진 료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남로53길 5-3	대암1·2리, 목단1·2리, 유산리, 내1·2리
징 리 보 건 소 진 료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10길 46	오설리, 도동1·2리, 징리
고 봉 보 건 소 진 료 소	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동로 47-2	고봉리, 평촌1·2리, 가천리, 예현리, 응암1·3리

□ 지방자치법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

-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